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996
----------	------

제출년월일 : 2017.0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주기 변경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어 정리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주기 변경(안 제3조)

나. 교통영향평가 용어 변경(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3장,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별표1 등)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7. 4. 6. ~ 2017. 4. 26.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4
- 방침결정문 : 붙임5

< 붙임 1 >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10년 단위”를 “5년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3조의6제1항·2항”을 “제13조의8”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를”로 한다.

제5조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제목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3조의5”를 “제13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3조의5제12항”을 “제13조의6제12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제13조의5제12항”을 “제13조의6제1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3조의5”를 “제13조의6”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 ②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12조의2 제2항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소관 실·과		교통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계장 김종수
	담 당 자 성명·전화	권효중 (행정 2979)

[별표 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경비지급 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단 위	단 가
검토경비 (심사수당)	건 당	- 건 당 : 40,000원 ※ 지급상한액 : 20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p> <p>1.(생략)</p> <p>2.도시교통정비계획”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u>10년 단위</u>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 및 투자 계획을 포함하는 중기계획, 그리고 해당연도 에 시행할 구체적 목표 물량과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 하는 3년 단위 시행계획을 말한다.</p> <p>3. “사업”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 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제 3항에 따른 <u>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u>의 수립 대상사업을 말한다.</p> <p>4. “변경심의”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 하여 법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영 제13 <u>조의6제1항·제2항</u>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 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 는 것을 말한다.</p> <p>5. “보고서”란 사업자가 <u>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u>을 수립한 자료를 말한다.</p> <p>6. ~ 10. (생략)</p>	<p>제3조(정의)</p> <p>1.(현행과 같음)</p> <p>2.----- ----- ----- <u>5년 단위</u> ----- ----- ----- ----- -----.</p> <p>3. ----- ----- ----- <u>교통영향평가</u> ----- -----.</p> <p>4. ----- ----- -----<u>제13</u> <u>조의8</u>----- ----- -----.</p> <p>5. ----- <u>교통영향평가</u> <u>를</u> -----.</p> <p>6. ~ 10.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견 청취)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7조에 따른 <u>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u>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08.08.></p>	<p>제5조(의견 청취) ----- ----- ----- ----- ----- <u>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u>-----.</p>
<p>제6조(기초조사) 시장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조사·분석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 제26조에 따른 <u>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u>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기초조사) ----- ----- ----- ----- <u>교통영향평가대행자</u>----- -----.</p>
<p>제3장 <u>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u></p>	<p>제3장 <u>교통영향평가</u></p>
<p>제7조(<u>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u>의 설치)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안산시 <u>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7조(<u>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u>) ----- <u>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u>----- -----.</p>
<p>제8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의5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u>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u>의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기능) ----- 제13조의6----- -----.</p> <p>1. ----- <u>교통영향평가</u>-----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2.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u>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 내용 중 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자문</u></p> <p>3. 영 제13조의5제12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의 의결</p> <p>4. ~ 8. (생략)</p> <p>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3조의5제1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10조(위원회 수당 등)</p> <p>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3조의5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u>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u>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8.08.></p> <p>②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u>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u>에 따라 시행되는 사전검토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 경비(심사수당)를 지급할 수 있다.</p>	<p>2. ----- ----- <u>국토교통부장관</u> ----- -----</p> <p>3. --제13조의6제12항----- -----</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 ----- - <u>제13조의6제12항</u>----- -----.</p> <p>제10조(위원회 수당 등)</p> <p>① ----- ----- ----- ----- <u>제13조</u> <u>의6</u>----- ----- <u>교통영</u> <u>향평가를</u> ----- -----.</p> <p>② ----- ----- <u>국토교통부장관</u> ----- ----- -----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의 제출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8조제1호의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를 완료 후 시장에게 디스크 등의 전자매체에 수록한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의 제출 등) -- ----- ----- ----- ----- -----.</p>